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13059	★주무관	자치행정팀장	자치행정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6.6.8.	양승규	김준영	정주영	代정주영	하철승	06/08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				
	기획예산과장			조상연			
	예산팀장			전혜정			
	법무팀장			이기호			
	주무관	송수연					



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

2016.6.3.

강 북 구

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(안) 검토보고

I 검토근거

- 구의회사무국-4495(2016.5.30.)호 및 행정지원과-15136(2016.5.31.)호

II 조례(안) 개요

- 조 례 명: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- 발의일자: 2016. 5. 30.
- 발 의 자: 이정식 의원
- 찬 성 자: 이백균 의원, 박문수 의원, 김명숙 의원, 강선경 의원, 유인애 의원, 이용균 의원, 김영준 의원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
- 예산조치: 필요함 【우리 구 방침(2016.4.26. 자치행정과-9887)에 포함된 (붙임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】
- 제안이유: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근 추가된 복지도우미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통장의 처우개선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함

III 조례(안) 주요내용

- 인플루엔자 통장 무료 예방접종 근거 마련 (안 제10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 (안 제5조의2 외)

IV 검토내용

- 인플루엔자 통장 무료 예방접종 근거 마련(안 제10조)
 - ▶ 검토의견: 우리 구에서 4.29 ~ 5.19 기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동일하므로 의견없음
- 기타,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, 조례(안) 개정 내용이 타당함

V

검토결과

이상 의원발의 조례(안)을 검토한 바, 주요 개정내용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고, 기타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내용이므로, 구청장 의견표명 요청에 대해서 “의견 없음”으로 통보하고자 함.

- 붙임: 1.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(안) 1부.
2. 우리 구 개정 추진 조례안 1부.
3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끝.